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3774 출자금
원 고 원고 (66년생)
대구 수성구 만촌동
피 고 1. 피고1 (67년생)
대구 수성구 매호동
2. 피고2 (63년생)
대구 수성구 파동
변 론 종 결 2012. 8. 16.
판 결 선 고 2012. 9. 13.

주 문

1. 피고1은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 가. 피고들은 각자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나. 피고1은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1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0. 4.경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 5천만원을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조합계약 당시 조합의 존속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 6. 22.경 조합탈퇴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탈퇴 의사를 표시한 2010. 6. 22.경 기준 조합재산 평가액(1억 5천만원) 중 원고의 지분(1/3)에 상응하는 금원(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및 피고들은 2010. 4.경 각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A푸드시스템(이하 'A푸드'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2010. 7. 12.경까지 1억 5천만원이 A푸드 계좌에 입금되었다.

(2) 한편, 피고2는 2009. 3. 2.경 주식회사 B미트(이하 'B미트'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B미트를 운영해 왔는데, 위 B미트의 상호는 2010. 4. 26. A푸드로 변경되었고, 상호 변경에 즈음하여 A푸드 법인등기부 목적사항란에 '농수산물 도,소매업, 농수산물 수입, 수출업, 식품잡화 도,소매업, 식품잡화 수입, 수출업' 등이 추가로 기재되었으며, 피고1은 자신의 명의로, 원고는 처 이미영의 명의로 A푸드의 발행주식 중 각 4,000주를 인수하였다.

(3) 또한 원고 및 피고들의 투자금 중 일부는 B미트를 A푸드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1 및 원고의 처 이미영은 2010. 4. 21. 각 A푸드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처 이미영은 2010. 6. 20.까지 A푸드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 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인 중 일부가 그와 같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을 이유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푸드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 구체적인 법인 설립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피고2가 대표이사로 있던 B미트의 상호를 A푸드로 변경하고 그 발행주식 중 일부를 원고 및 피고1이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A푸드에 관하여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